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 : 윤한홍 · 한무경 · 강대식

이명수・홍준표・곽상도

태영호 · 김영식 · 이만희

권성동・강기윤・추경호

김기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 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신설등).

법률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제3호"를 "제9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제4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제4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제7항제1호"를 "제22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9조 중 "제22조제2항"을 각각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을 각각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4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5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11항"을 "제22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		
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u>제3항</u> 에 따라 지정된	<u>제5항</u>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u>제2항</u> 에 따	<u>제4항</u>	
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	
<u><신 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u>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
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
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 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 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③ ·④ (생 략)

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
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5항
<u>⑤</u> ・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⑦</u>

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u>제6항</u>에 따라 시험·검사기 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 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 정받은 경우
- 5. (생략)
- 8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 <u>제4항</u>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u>⑨</u>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8항</u>
5. (현행과 같음)
제9항제3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 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u>제2항</u>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 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 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 한 경우
- 5. <u>제3항</u>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u>제3항</u>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한 경우
- 7. <u>제11항</u>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

<u> </u>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항</u>
4. <u>제4항</u>
4. <u>제4항</u>
4. <u>제4항</u>
4. <u>제4항</u> 5. <u>제5항</u>
4. <u>제4항</u> 5. <u>제5항</u>
4. <u>제4항</u> 5. <u>제5항</u> 6. <u>제5항</u>
4. <u>제4항</u> 5. <u>제5항</u> 6. <u>제5항</u>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 한 경우

<u>⑩</u>·<u>⑪</u>(생 략)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다만, 제22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u>⑫</u> ・ <u>⑬</u> (현행 제10항 및 제11
항과 같음)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
제22조제9항제1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
한)
인)
المحادث
<u>제22조제4항</u>
<u>제22</u> 조제4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 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 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 7 (생 략)
 -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 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 전기준(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 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u>제22조제4항</u>
<u>제22조제4항</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3. 제22조제5항-----시험 · 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현행과 같음) 4. (생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40조(청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 • 2. 제22조제11항-----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1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 14. 제22조제4항-----

	- :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함
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u>제22조제3항</u>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거
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 안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
·검사한 자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u>제22조제7항</u> 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17.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	험 •

17. 제22조제9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 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검 사를 한 자

18. ~ 22. (생 략)

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4. (생 략)

15
<u>제22조제5항</u>
16
<u>제22조제9항</u>
17. 제22조제11항
18.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 14. (현행과 같음)

- 1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 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아니한 자
- 16. <u>제22조제11항</u>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시험・검사 기관

17. ~ 25. (생략)

④ (생 략)

15. <u>제22조제7항</u>
16. <u>제22</u> 조제13항
17.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